

2025년 김제시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공고

김제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'2025년 김제시 수출사다리 지원사업'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9일
KOTRA전북지원본부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김제시 수출사다리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김제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19개사 내의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내용 : 아래 지원사업 중 기업이 택1하여 선정 시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 지원(기업 선지출 금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제외)

<지원사업 구분>

연번	지원사업	지원사항	지원기업수
1	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	·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일부 · 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 ·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일부	6개사
2	수출물류비 지원사업	· 수출자가 부담하는 물류비 일부	9개사
3	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	·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비용 일부	4개사

※ 선정제외
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(공정위 기준 대기업군)
- 정부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중복지원받는 경우

2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3. 19.(수) ~ 4. 18.(금)
- 신청방법 : ①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하단 '신청하기 클릭 및 절차 진행
② 아래 신청서류 이메일(kotra-jb@kotra.or.kr) 송부
* 상기 신청방법 ①, ② 단계 모두 완료해야 사업신청 완료로 간주
- 신청서류 : 1. 참가신청서 & 활용계획서 (별첨)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별첨)
3. 사업자등록증
4. 공장등록증 ※ 공장이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5. 국세 납세증명서 & 지방세 납세증명서
*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
-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기한 : 선정일 ~ 2025. 8. 31.(일)
※ 선정기업이 기한(2025. 8. 31.) 내 결과보고 및 증빙 미제출 시 사업 참가 포기로 간주
- 문의처 : KOTRA전북지원본부(063-714-3483)

3 추진 일정

① 신청기업 모집 및 선정

- 기업 모집 : KOTRA 무역투자24(www.kotra.or.kr) 통해 신청 접수
- 평가 기준 : 참가기업 선정평가표에 따름
- 선정 절차 :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선정

② 선정기업 사업 수행

- 선정기업이 직접 수행업체를 선택하여 희망하는 사업 수행
 - * 선정기업이 수행업체에 비용 선지출 필수

③ 선정기업 결과보고

- 선정기업이 사업 참가 후 KOTRA에 결과보고 증빙 제출(붙임 3)

④ 선정기업 비용 정산

- KOTRA가 결과보고 증빙 검토 후 선정기업별 은행계좌에 지원금 입금

4 지원사업별 세부내역

1.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규모 : 김제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6개사 내외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내용 : 아래 세부항목 실비 사후 지원(기업산출금액의 80% 지원 불가세제외)
 - * 연간 500만원 한도 내 복수 선택 가능

<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중 세부항목 구분>

세부항목	세부 지원사항
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어 홍보물(홈페이지 / 카탈로그 / 홍보동영상) 제작비 일부 * 번역비·인쇄비 포함 가능하나, 순수 한국어 홍보물 제작은 미지원
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(아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증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*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 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- 컨설팅비 :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 * 지원대상 인증은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)을 따름
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* KOTRA가 수행하는 해외지사화(발전, 1년) 서비스만 지원

- 지원요건 : 선정기업이 대상기간(2025.1.1.~8.31.) 내 사업 수행 완료
 - * <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>의 경우, 해당 기간 내 협약이 시작되어야 함

나. 선정기준

- 선정기준 : 참가기업 선정평가표에 따름
 - * 정량평가(지역경제 기여, 수출 준비 등) + 정성평가(수출 추진전략, 지원사업 활용계획 등) + 가점

2.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규모 : 김제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9개사 내외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내용 : 아래 세부항목 실비 사후 지원(기업 산출금액의 80% 지원 부가세 제외)

<수출물류비 지원사업 內 지원 가능/불가 항목 구분>

구분	세부 지원사항
지원 가능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상 수출품 및 유상거래 샘플 운송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자가 부담*하는 국제운송료(해운·항공) 및 적하 보험료 * 인코텀즈 C조건(CFR·CIF·CPT·CIP) 및 D조건(DAP·DPU·DDP)에 해당 -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, 보안할증료, 저유할증료, 성수기 할증료, 전쟁위험할증료 · 국제 특송 이용료(EMS, DHL, FEDEX 등)
지원 불가 항목	<p>[결과물 및 비목 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상거래품 운송비 * 완제품, 샘플 등 종류 불문 · 수입 물류비 *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경우에도 불가 · 국내운송료, 취급수수료(위험물 등), 창고보관료 등 부대비용 ·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· 도착국 통관 후 발생하는 운송비 · 각종 문서 송달비 ·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· 농식품 수출물류비 * 근거 : 제10차 WTO 각료회의 <p>[사유 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조건(EXW) 및 F조건(FCA·FAS·FOB) 수출거래일 경우 ·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(해외→해외) 운송일 경우 · 운임청구서(INVOICE) 상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이 부실한 경우 ·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· 간접수출 등의 사유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· 물류사(포워더)가 아닌 바이어 또는 중개인에게 물류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 · 자사 현지법인 또는 지사로 원부자재(중간재)를 수출하는 경우 <p>※ ‘지원 불가 항목’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‘지원 가능 항목’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 불가</p>

- 지원요건 : 선정기업이 대상기간(2025.1.1.~8.31.) 내 사업 수행 완료

나. 선정기준

- 선정기준 : 참가기업 선정평가표에 따름
 - * 정량평가(지역경제 기여, 수출 준비 등) + 정성평가(수출 추진전략, 지원사업 활용계획 등) + 기점

3.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

가. 사업개요

- 사업규모 : 김제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4개사 내외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내용 : 해외전시회 개별참가* 비용 중 아래 세부항목 실비 사후 지원(기업 선지출 금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제외)
 - * 개별참가 :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
<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내 지원 가능/불가 항목 구분>

구분	세부 지원사항
지원 가능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시회 직접비 : 부스임차료, 장치설치비, 집기대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지 법인·에이전시 통해 참가 시에는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필요 ·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 : 편도(수출) 해상/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내 반출 → 해외전시장 반입 수출통관 기준 임차부스 면적 9㎡ 당 1CBM 한도 지원 (항공 운송 시 167kg = 1CBM 간주) * 국제 특송 이용료(EMS, DHL, FEDEX 등)는 미지원 ·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비 :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,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<p>※ 수출이 아닌 다른 목적의 전시회(현장 판매 위주 판촉전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)일 경우 지원 불가</p>
지원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시회 간접비 : 항공임, 현지 체재비, 통역비, 각종 홍보물 제작비, 물품 구매비용 등 · 전시품 반송(수입)비,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(9㎡ 당 1CBM 지원 기준) · 핸드캐리 전시품 운송비 · 참가신청 수수료 : 협·단체,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· 산정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 : 외화결제 시 적용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 ·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· 국내 발생 부가세 ·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

- 지원요건 : 선정기업이 대상기간(2025.1.1.~8.31.) 내 사업 수행 완료

나. 선정기준

- 선정기준 : 참가기업 선정평가표에 따름
 - * 정량평가(지역경제 기여, 수출 준비 등) + 정성평가(수출 추진전략, 지원사업 활용계획 등) + 가점

붙임1**사업 신청 시 제출자료 (기업 선정 목적)**

*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

구분	제출자료	
필수 제출	1	참가신청서 & 활용계획서
	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	3	사업자등록증
	4	공장등록증 ※ 공장이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	5	국세 납세증명서 & 지방세 납세증명서
선택 제출		외국어 카탈로그, 외국어 홍보동영상
		해외인증서
		여성기업 확인서
		장애인기업 확인서
		사회적기업 인증서
		벤처기업 확인서
	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서	

붙임2

사업 수행 후 제출자료 (비용 정산 목적)

* 선정기업 대상 추후 별도 안내 예정

구분		제출자료		
공통		1	법인통장 사본 * 개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 명의 통장	
		2	선정기업 선지출 비용 증빙 - (계좌이체 시) 세금계산서, 이체 확인증 - (카드결제 시) 매출전표 * 공급가액 및 세액이 구분된 증빙만 인정	
글로벌 시장 진출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	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	1	복수 견적서(직인 필수) * 제작 건별 100만원 초과 시 복수의 수행업체로부터 견적서 수령하여 저렴한 수행업체 선택 필요	
		2	선정기업-수행업체 간 계약서(직인 필수)	
		3	선정기업-수행업체 간 납품 및 검사조서(직인 필수)	
		4	사업 결과물 - (외국어 홈페이지) 메인/세부 페이지 캡처본(전후비교 필수) - (외국어 카탈로그) PDF 원본 - (외국어 홍보동영상) 동영상 원본	
	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	1	견적서(직인 필수)	
		2	선정기업-수행업체 간 계약서(직인 필수)	
		3	사업 결과물 : 해외인증서	
	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	1	선정기업-KOTRA무역관 간 지사화사업 시행 협약서	
	수출물류비 지원사업		1	수출물류비 결과보고서
			2	수출·통관 관련 증빙 - 상업송장(C/I) - 패킹리스트(P/L) -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 - 수출신고필증
3			집행 관련 증빙 - 물류사(포워더) 발급 인보이스 * 세부내역 명시 필요 - 물류사(포워더)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* 화주(수출자),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* 화주(수출자)는 참가기업, 수입자는 현지거래선이어야 함	
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		1	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계약서	
		2	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결과보고서	